

# 대리청구인지정서비스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 1조 [ 목적 ]

제 2조 [ 용어의 정의]

## 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 3조 [ 보험금의 청구 ]

제 4조 [ 보험금의 지급절차 ]

##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5조 [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]

제 6조 [ 특약의 소멸 ]

## 제4관 대리청구인의 지정

제 7조 [ 대리청구인의 지정 ]

제 8조 [ 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]

## 제5관 기타사항

제 9조 [ 준용규정 ]

# 대리청구인지정서비스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### 제 1조 [ 목적 ]

이 특약은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이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대리하여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### 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
가. 주계약: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.

나. 특약: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.

다. 보험계약자: 보험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와 보험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, 이하 “계약자”라 합니다.

라. 보험수익자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마. 피보험자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#### 2.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

가. 기명 대리청구인: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,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.

나. 무기명 대리청구인: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,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.

## 제2관 보험금의 지급

### 제 3조 [ 보험금의 청구 ]

①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에서 지정된 대리청구인(이하, “대리청구인”이라 합니다)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(회사양식)

2. 사고증명서

3. 대리청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하며, 이하 '신분증'이라 합니다)
  4.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5.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-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(의료기관)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#### **제 4조 [ 보험금의 지급절차 ]**

- ① 대리청구인은 제3조(보험금의 청구)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5조(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) 제2항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인의 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, 대표 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 다만, 2인 이상의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④ 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### **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**

#### **제 5조 [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]**

-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.
- ② 이 특약의 적용대상은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으로 합니다.

#### **제 6조 [ 특약의 소멸 ]**

제5조(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)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

## 용어해설

### [ 해지 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제4관 대리청구인의 지정

### 제 7조 [ 대리청구인의 지정 ]

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1. 제2항에서 정한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청구인(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,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인 지정)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, 무기명으로 제3조(보험금의 청구) 제1항 제4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[ 대리청구인 지정 예시 ]

##### • 기명 대리청구인

-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: (예시) “김OO”

##### • 무기명 대리청구인

-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명 : (예시)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

#### [ 무기명 대리청구인 판단 예시 ]

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(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)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인 경우

→ 해당 시점 대리청구인은 제3조(보험금의 청구) 제1항 제4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제8조(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)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제3조(보험금의 청구)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1.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
2.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. 다만,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.

③ 제1항에 따라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(회사양식)
2. 계약자의 신분증
3.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(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)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#### **제 8조 [ 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]**

-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.
1.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(회사양식)
  2. 계약자의 신분증
  3.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4.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### 제5관 기타사항

#### **제 9조 [ 준용규정 ]**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.